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21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이형석·이용빈·김영주

박 정・고영인・임호선

신정훈 · 안규백 · 진성준

한병도 • 전용기 • 양기대

허 영·서영교·김성주

김홍걸 • 권칠승 • 송옥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에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실효성 있는 안전운전 주의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4호, 제12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중 노면표시
- ⑥ 제5항에 따른 노면표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④ (생 략)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
	승)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	5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	
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중 노면표시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u> <신 설></u>	⑥ 제5항에 따른 노면표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
	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
	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를 표
	시하여야 한다.